



종로구보



제 894호 2008. 1. 25.(금)

1.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2.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【공 고】

- 제2008-45호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공람공고 1

- ◎ 구보는 **종로구 홈페이지(www.jongno.go.kr)** 행정정보→구정소식→구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◎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이며,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

D-3접수

→

D-2 편집 및 교정

→

D-1 인쇄 및 수송

→

D일 보급

공 람									

발행인 : 종로구청장 / 편집인 : 기획예산과장 / ☎ 731-0410(팩스 731-0460)

공 고
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8-45호

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89호(2007. 6.21)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(변경)된 우리구 관내 체부동 12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

2.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는 공람장소(종로구청 주택과,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)에 비치하고 있으며,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8년 1월 25일

종 로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2008. 1. 25 ~ 2008. 2. 8 (15일간)

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택과(☎731-1406),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(☎732-9213)

다. 공람내용

1) 정비구역

가) 정비구역 지정조서

지정구분	정비사업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규	체부제1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	종로구 체부동 127번지 일대	-	증) 42,479	42,479	

2) 정비계획

가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결정

구 분		명 칭			비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주 거 지 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,265.20	감)1,265.20	0.0	0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37,358.30	감)20,495.54	16,862.76	39.7	
	제2종일반주거지역 (12층이하)	3,855.50	증)21,760.74	25,616.24	60.3	
총 계		42,479	-	42,479	100.0	

나)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1,142.94	증)41,336.06	42,479.00	100	
정비 기반 시설 등	소 계	1,142.94	증)7,673.09	8,816.03	20.75	
	도 로	1,142.94	증)4,003.14	5,146.08	12.11	
	공 원	-	증)3,561.89	3,561.89	8.38	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	공공공지	-	증)108.06	108.06	0.25	
택 지 (획 지)	소 계	-	증)33,662.97	33,662.97	79.24	
	택지(1-1) (공동주택)	-	증)13,112.79	13,112.79	30.86	
	택지(1-2) (사회복지시설)	-	증)251.69	251.69	0.59	
	택지(1-3) (종교시설)	-	증)243.81	243.81	0.57	
	택지(2-1) (공동주택)	-	증)20,054.68	20,054.68	47.21	

다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

(1) 도로

결구분		규 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기점	종점			
도시 계획 시설	기정	중로	2	4	15	집산 도로	일반 도로	650	필운동 138-2	옥인동 92	-	서고2000-3호 2000.1.10	
	변경	중로	2	4	15~18	집산 도로	일반 도로	650 (74)	필운동 138-2	옥인동 92	-	-	연장 (도로확폭)
	신설	소로	2	1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07	체부동 6	체부동 29-2	-	-	
	기정	소로	2	-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79	필운동 163	체부동 52	-	-	
	변경	소로	2	2	6~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79 (270)	필운동 163	체부동 52	-	-	연장 (도로확폭)
	신설	소로	3	1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63	체부동 29-2	체부동 54-1	-	-	
	기정	소로	3	2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210	필운동 173-3	체부동 36	-	건고432 63.7.1	
	신설	소로	3	3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61	체부동 97-2	체부동 81	-	-	

※ ()는 정비구역에 포함된 연장

(2) 공원·녹지 등

결정구분		시설의 종류		위치	면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명칭	세분류		기정	변경	변경후		
도시계획시설	신설	공원	문화공원	필운동 177 일원	-	증)2,061.30	2,061.30	-	
	신설		어린이공원	체부동 120-14일원	-	증)1,500.59	1,500.59	-	

라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시설의 종류	법정기준	법정기준	계획면적(㎡)	비고
경로당	100세대 이상, 40㎡+(600-150)×0.1	85.00	120.0	
보육시설	300세대 이상 설치	171.60	180.0	
주민공동시설	300세대 이상, 50㎡+(600-300)×0.1	80.00	90.0	
문고 및 도서관	300세대 이상	80.00	90.0	
어린이놀이터	50세대 이상, 300㎡+(600-100)×1	800.0	810.0	
관리사무소	10㎡+(600-50)×0.05=37.7㎡ 이상	37.70	50.0	
휴게시설	1개소+(600-500)/500=1.20⇒3개소 이상	-	설치함	

마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(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결정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계	준 치	개 수	철거 후 축	철 거 주	
신설	체부 1구역	42,479	1-1	13,112.79	체부동 118-17 일원	28 5	-	-	285	-	
			1-2	251.69	체부동 6 일원						
			1-3	243.81	체부동 102 일원						
			2-1	20,054.68	체부동 163-3 일원						

(2) 건축시설계획

[illegible]

바) 정비사업 시행계획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	비 고
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설 건설·공급	구 역 지 정 고시일로부 터 4년이내	체 부 제 1 구 역 주 택 재 개 발 정비사업조합	·현황 : 343세대 (세입자 포함) ·계획 : 600세대	이상없음 (홍수 및 강우 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)	전면 개발

라.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). 끝.